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6월 2일

나.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노상욱)

가. 제안이유

- 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창의·인성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생”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용어의 정비(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주요 내용으로

-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뜻함.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區)의 △창의·인성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과 △차별금지 대상을 “학생과 그 부모”에서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로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검토 결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인성교육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창의·인성 교육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률과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창의·인성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편견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차별금지 대상에 학생과 부모만을 규정한 것이 자칫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부모 등 보호자로 용어를 정비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30 호
----------	---------

제출연월일: 2025.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창의·인성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나. 용어의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3) 인권영향평가: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
- 상기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변경 전) 학생과 그 부모 → (변경 후)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
라. 입법예고(2025. 5. 1.~5.21./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 중 “그 부모”를 “그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3. (생략)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u>그</u>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3. (현행과 같음) 제4조(차별금지) ----- <u>그</u> 부모 등 보호자----- ----- ----- -----.